
버스 교통안전관리 매뉴얼

2024. 8.

 **한국교통안전공단**

목 차

1. 자가점검표를 활용한 자체점검	1
1-1. 운송사업자 자가점검표	1
1-2. 운수종사자 자가점검표	3
2. 면허 및 등록 관리 중점 사항	4
2-1. 자동차등록대수 및 차고지	4
2-2.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7
3. 운전자 관리 중점 사항	9
3-1. 운전업무의 자격요건	9
3-2. 운전자 현황 보고	11
3-3. 운전자 음주 확인 및 음주운행 금지	12
4. 운행 관리 중점 사항	13
4-1. 휴식시간 보장 및 준수	13
4-2. 좌석 안전띠	15
4-3. 운전자격증명 및 차내 표지판	16
5. 교육 관리 중점 사항	18
5-1. 운전자 교육	18
5-2.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20
6. 자동차 관리 중점 사항	21
6-1. 운행기록장치	21
6-2. 최고속도제한장치	23
6-3.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25
6-4. 버스자동차 안전 기준(여객법)	27
6-5. 기타 자동차 관리 항목(자동차관리법)	29
7. 교통사고 관리 중점 사항	30
7-1.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	30
7-2. 교통사고 관련 자료	31
8. 점검항목별 관련법 및 행정처분 내용	32
9. 관련 시스템 소개(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안전컨설팅시스템)	40

1-1. 운송사업자 자가점검표

구분	착안사항	점검방법	점검 결과	점검주기		
				계약시	정기 매일	분기
일반 현황	1. 면허·등록받은 차고지에서 밤새 주차함	사업계획서 확인			○	
	2. 면허·등록받은 차고지를 적법하게 확보·운영함	사업계획서 확인			○	
	3.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함(20대 이상)	지정신청서			○	
운전자 관리	4. 취업 운전자가 자격요건(버스적합 운전면허, 20세 이상, 적성정밀검사 적합, 버스종사자격 취득 등)을 충족함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하고, 신규/자격유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음 - 신규검사 : 적합 - 특별검사(중상(3주) 이상 사상사고, 과거 1년간 별점 81점) : 검사 수검 - 자격유지검사(만 65세 이상 3년마다, 만 70세 이상 1년마다) : 적합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	
	5. 운전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적기 보고함 - 채용·퇴직 운수종사자 명단 :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 매월 10일까지 - 전월 휴식시간 보장내역 : 매월 10일까지			취업보고 현황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	○
	6. 운행 전 운전자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음주 시 운행을 금하고 있음			운행 전 운전자 음주 확인	○	
운행 관리	7.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함 - 1회 운행 종료 후 : (시내·농어촌·마을) 10분 이상, (시외) 15분 이상 - 2시간 이상 운행 종료 후 : 15분 이상 - 마지막 운행 종료 후 첫 운행시작 전까지 : (노선, 전세) 8시간 이상, (광역급행, 직행좌석, 시내) 10시간 이상	운행기록분석시스템			○	
	8. 운행기록자료를 보관·제출하고, 운행기록장치의 조작을 금함 ※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정상 업로드 확인				○	

교육 관리	9. 운전자의 신규·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함	교육 수료증 교통연수원 조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중대 교통사고자(1건 8주 이상)의 교통 안전 체험교육 이수를 확인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운전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작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교육일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교통안전담당자의 신규·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함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수료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교통 사고 관리	13.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 개략적인 상황을, 72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교통사고 관리대장, 사고보고서			<input type="radio"/>
	14.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함	교통사고 관리대장			<input type="radio"/>
자동차 관리	15.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가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있음				<input type="radio"/>
	16. 차내 표지판(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을 게시함			<input type="radio"/>	
	17. 차량을 정기적으로 수검함	자동차등록대장		<input type="radio"/>	
	18. 앞바퀴 재생타이어 및 튜브리스 타이어 (시외, 전세)를 사용하지 않음	자동차 타이어 확인		<input type="radio"/>	
	19. 자동차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 한지 확인하였음				<input type="radio"/>
	20. 운전자용 자가점검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운전자 자가점검표확인			<input type="radio"/>

* 버스 운송사업자는 점검결과에 양호/불량을 표시하여 보완조치 시행

확인일자 :

확인책임자 서명 :

1-2. 운수종사자 자가점검표(★ : 광역급행형시내·시외·전세)

구분	착안사항	점검결과	점검주기		
			계약시	정기	매일
자격 관리	1.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input type="radio"/>	
	2. 음주시 운행을 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운행 관리	3. 운전자 휴게시간을 준수함 - 1회 운행 종료 후 : (시내·농어촌·마을) 10분 이상, (시외) 15분 이상 - 2시간 이상 운행 종료 후 : 15분 이상 - 마지막 운행 종료 후 첫 운행시작 전까지 : (노선, 전세) 8시간 이상, (광역급행, 직행좌석, 시내) 10시간 이상			<input type="radio"/>	
	4.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함★	차량 방송 멘트 확인		<input type="radio"/>	
	5. 운행기록자료 요청 시 적기에 제출하고, 자료를 조작하지 않음			<input type="radio"/>	
	6.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함			<input type="radio"/>	
교육 관리	7. 중대 교통사고(1건 8주 이상) 발생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함			<input type="radio"/>	
	8.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함			<input type="radio"/>	
자동차 관리	9.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고,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함			<input type="radio"/>	
	10. 차 안에 여객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함			<input type="radio"/>	
	11. 전조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정상 작동됨			<input type="radio"/>	
	12. 승객의 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input type="radio"/>	
	13. 타이어의 상태(손상 및 마모정도)가 안전기준에 적합함(트레이드 홈 깊이 1.6mm 이상)			<input type="radio"/>	

* 버스 운수종사자는 점검결과에 양호/불량을 표시하여 보완조치 후 회사에 제출

확인일자 :

운전자 서명 : _____

2-1. 자동차등록대수 및 차고지

- 버스 운송사업자는 면허 및 허가 기준에 적합한 최저 자동차 대수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에 적합한 규모의 차고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및 등록 기준 자동차대수(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구분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 및 등록기준 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면허기준 [별표 2]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등록기준 [별표 3]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 이상		10대 이상	10대 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 이상	5대 이상	5대 이상

※ 면허 기준 – 시내, 농어촌, 시외버스

-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해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 3)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5)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이하 "천연가스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천연가스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 등록 기준 - 전세, 특수여객, 마을버스

-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 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섬과 외딴 곳,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 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용자동차 대수의 20 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보유차고지 면적 기준

구분	업종	대당 면적(최저)
면허 및 등록기준	가. 시내, 농어촌, 시외 및 전세, 마을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m ² ~ 40m ² 23m ² ~ 26m ² 15m ² ~ 18m ²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대형승합자동차 2) 중형승합자동차 3)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36m ² ~ 40m ² 23m ² ~ 26m ² 15m ² ~ 17m ² 13m ² ~ 16m ²

-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 4)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7의가 및 나, [별표5] 제1호의4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및 등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휴게실 등 부대시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 (1차)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사업허가취소 ■ 면허 및 등록(허가)기준 중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 (1차) 사업일부정지 15일, (2차) 30일, (3차) 45일 - 과징금 : (1차) 90만원, (2차) 180만원, (3차) 270만원

○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
-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
- 3) 등록관청이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 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법 제4조(면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6의마, [별표5] 제1호3의마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 (1차) 운행정지 3일, (2차) 운행정지 5일 - 과징금 : (1차) 10만원(전세·특수여객 20만원), (2차) 15만원(전세·특수여객 30만원)

2-2.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 20대 이상 버스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범위(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

- 1)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명 이상의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관리자
 - 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갖춘 자 - 교통사고분석사, 교통사고감정사

-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 자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 2) 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감독
-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 5) 교통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

-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16시간)
-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8시간)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제1항, 제2항 - 시행령 [별표9] 제2호카목, 타목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0만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참고] 교통안전관리규정

- 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이상인 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교통안전법 제21조)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적정성 검토: 규정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심사
 - 이행확인·평가: 규정 제출한 날로부터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00일 이내
 - 적합: 적합 판정 후 완료
 - 조건부적합(변경): 30일 이내 변경 보완 조치
 - 부적합(재검토): 30일 이내 재검토 신청 및 검토

3-1. 운전업무의 자격요건

-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 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자격요건(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
 - 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 여객법 제24조(운전업무 종사자격)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0, [별표5] 제1호의12, [별표6] 제2호거목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 (1차) 감차명령, (2차) 노선폐지명령 - 과징금 :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특수·수요응답형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 (운수종사자)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1회) 5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50만원

※ 운전적성정밀검사(시행규칙 제49조제3항)

구 분	대 상
신규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자 제외 ■ 신규검사 적합자로서 수검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자 제외
특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인 자(적합판정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외) ■ 만70세 이상인 자(적합판정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외) ■ 최초 : 만65세 및 만70세의 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계속 : 자격유지검사 수검 후 매 3년(만65세 이상 ~ 만70세 미만) 및 1년(만70세 이상)이 경과한 자로써 최종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참고]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 공단(TS) 시스템을 통해 부적격운전자 및 입·퇴사자 누락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시스템 접속 (https://drv.kotsa.or.kr)	사용방법 확인 (매뉴얼 다운로드)	시스템 접속 (공인 인증서)	관련 업무 처리 (입·퇴사 입력 확인 등)
---	-----------------------	--------------------	----------------------------

3-2. 운전자 현황 보고

- 운송사업자는 운전자 채용 및 퇴직 명단과 현황,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 매월 10일까지

-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시행규칙 제45조)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통보할 수 있다.(전자문서 포함)

1. 운수종사자의 현황 :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
2. 휴식시간 보장내역 :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

- 주요 위반사항

- ① 채용 또는 퇴직 운전자를 법에서 정한 기일 내 보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및 수습 기간 중 입·퇴사 보고를 하지 않고 승객을 태우고 영업하는 경우
- ② 노선버스의 경우 매월 10일까지 전월 각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지연 입력하는 경우

- 벌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 시행령 [별표6] 제2호파목, [별표6] 제2호하목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자 취업 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과태료 :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과태료 :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3-3. 운전자 음주 확인 및 음주운행 금지

-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하고, 필요시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⑫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외)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시행령 제12조의4)

-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2항 전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이하 “호흡측정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확인해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및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흡측정기의 사용방법과 기록의 보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4 및 25, [별표5] 제1호의16 및 17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 :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120일, (3차 이상) 180일- 과징금 :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3차 이상) 1,080만원■ 음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 :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180일, (3차 이상) 180일- 과징금 : (1차) 540만원, (2차) 1,080만원, (3차 이상) 1,620만원

4-1. 휴식시간 보장 및 준수

-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휴식시간을 준수하며 운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 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 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 휴식시간 보장(시행규칙 제44조의6)

- ① 시내버스·농어촌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2.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구분	기본 휴식시간		연장된 휴식시간		휴게 시간
	노선운행 종료 후	운행 중	노선 운행시간 2시간 이상	노선 운행시간 4시간 이상	
시내·농어촌·마을	10분 이상	-	15분 이상	30분 이상	
시외(고속)	15분 이상	15분 이상 (2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이상(1시간 연장운행 시)		8시간 (10시간)
전세	15분 이상 (목적지 도착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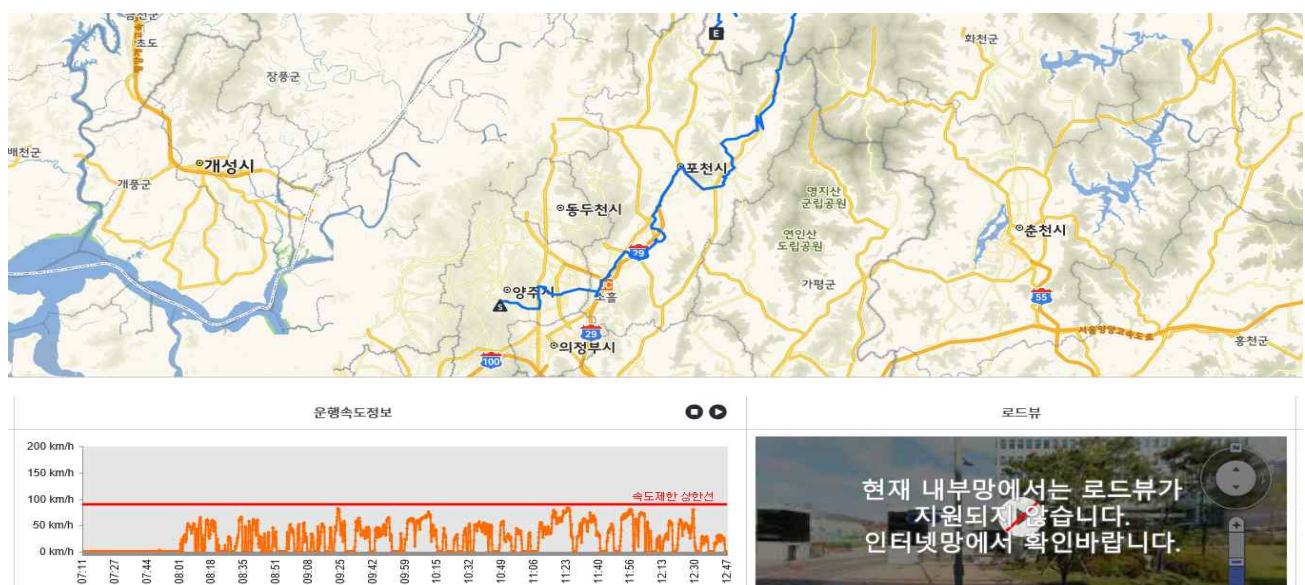
·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휴게시간 10시간, '18.4.25 시행)

○ 벌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3, [별표5] 제1호의15, [별표6] 제2호차목 ▪ 여객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6] 제2호러목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에게 제21조제11항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 (1차) 사업전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 과징금 :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 과태료 :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운전자가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10만원

○ (관리방법) 운행기록자료를 정기적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에 제출도록 하고,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및 운수안전컨설팅시스템 등을 통해 휴식시간 준수 여부 관리

[참고] 운수안전컨설팅시스템 내 운행기록자료



4-2. 좌석 안전띠

- 운송사업자는 좌석안전띠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운전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내용, 시기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시행규칙 제44조의3)

-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및 안내시기를 교육하여야 한다.
- ③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항 및 제7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별표6] 제2호사목 및 아목■ 여객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3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별표6] 제2호어목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광역급행형버스, 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차량 출발 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

4-3. 운전자격증명 및 차내 표지판

-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운전자격증명 및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⑯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 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 종사자(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 운전자격증명의 게시(시행규칙 제57조)

-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2.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사람
 3.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4])

- ① 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않음),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3항 -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라, 서, [별표5] 제1호의18의라, 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법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6] 제2호너목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 (1차) 운행정지 5일, (2차) 운행정지 10일 - 과징금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 운행정지 5일 - 과징금 : 10만원 ■ 운수종사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이상) 20만원

5-1.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운행 전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교육 미이수 운전자 가 차량을 운행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시행규칙 [별표4의3])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보수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비고

1.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택시 운송사업자 해당)
 - 나.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5.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6.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 (관리방법)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및 교육수료증을 통해 해당연도 교육대상자 (협회 및 교통문화연수원)가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 벌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제1항 및 제2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8, [별표5] 제1호의20-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의10)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 :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과징금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90만원▪ (운수종사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 : 자격정지 5일

5-2.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 중대 교통사고(8주 이상)를 야기한 운전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①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량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대상 및 교육시기 등(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 1) 교육대상 :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영업용 차량사고 시)
- 2) 교육기한 :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한 기간내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 (실형 선고)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 (운전자 상해)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면허취소 및 정지) 운전면허 재취득 또는 정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 3) 교통수단운영자는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리방법) 무사고경력증명서 또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취업 운전자 및 소속운전자의 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제1항 - 시행령 [별표9] 제2호러목
처분내용	▪ 체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 체험코스



6-1. 운행기록장치

- 운송사업자는 모든 여객용 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한 채로 운행하여야 하며, 기록된 자료를 보관하고,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③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4])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구 분	내 용
장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등록된 차량 : 2012년 12월 31일이후 운행 차량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규등록 차량 : 신규등록일 <p>* 장착면제차량 : 200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차량</p>
확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기간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보존기간 : 6개월> ▪ 보관방법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운행기록장치, PC, CD, USB 등> ▪ 보관 : 현장 확인 점검 ▪ 제출 :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kotsa.or.kr)에서 확인 ▪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자료 제출을 통해 운행기록장치 고장 유무 확인

○ 벌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9] 제2호파목, 하목, 거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사, [별표5] 제1호의18의바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2] 제2호버목의1)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150만원) ▪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150만원) ▪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100만원 ▪ 운행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 과징금 :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180만원 - 과태료 : 100만원

- 운행기록분석시스템(<http://etas.kotsa.or.kr>)을 통한 자료 확인

1. 회원가입/권한신청



2. 운행기록분석결과 검색 및 활용

【운행정보 통계분석】

【GIS분석서비스】



【종합진단표】



6-2. 최고속도제한장치

-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4])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3항)

구 분	내 용
설치대상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합자동차 : 매시 110km- 저속전기자동차 : 매시 60km
확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행기록자료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최고속도 초과 유무 확인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법 제21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사, [별표5] 제1호의18의바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2] 제2호버목의1)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정비 및 정비 명령 등)제1항제1호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 과징금: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180만원 - 행정조치: 임시검사명령 ■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79조제5의2, 제80조제4호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칙 : (무단해체,조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해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3.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 승합자동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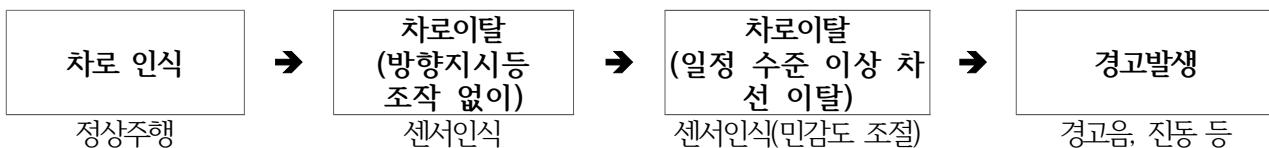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개요

- 졸음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차로 이탈시 경고(소리, 진동 등)



-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구 분	내 용
장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
면제차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피견인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o 벌칙규정

구 分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ul style="list-style-type: none">시행령 [별표9] 제2호너목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ul style="list-style-type: none">과태료 :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150만원)

나.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비상자동제동장치 개요

-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구 분	내 용
장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3(장착대상 차량)<ol style="list-style-type: none">1.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면제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면제차량)<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2.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위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 벌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별표2] 제2호버목의2)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자동제동장치 미장착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 30만원

6-4. 버스자동차 안전 기준(여객법)

○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4])

구 분	세 부 사 항
자동차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동차 안에 표지판(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및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를 게시하여야 한다.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감응장치 작동여부</p>
재생타이어 및 튜브리스타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직행버스, 전세버스는 앞바퀴에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정상 타이어</p> <p style="text-align: center;">재생타이어</p>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라, 아, 타, 파 - 시행령 [별표5] 제1호의18의라, 사, 카, 타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 (1차) 운행정지5일, (2차) 10일 - 과징금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미설치 유행포함), (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거나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 - 과징금 :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3차 이상) 1,080만원

6-5. 기타 자동차 관리 항목(자동차관리법)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동차를 관리하여야 한다.

구 분	세 부 사 항
자동차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번호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정해진 기준으로 장착하고 유행하여야 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봉인 탈락</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번호판 훼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번호판 미부착</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번호판 탈색</p> </div> </div>
등화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2항제14호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유리, 소화기 및 방화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2항제11호 및 제19호 화재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적정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타이어 마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제2항제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주행장치)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m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사목, 버목의3) 및 4), 보목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 (30일 이내) 4만원,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증액, (115일 이상) 60만원 등록번호판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 ①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②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③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차량이나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 :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등화장치 및 타이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한 경우 : 과태료 3만원 창유리, 소화기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 과태료 5만원

7-1.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

-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복(顛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 사고시의 조치(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보고사항 외 노선번호, 사고 운전자 인적 사항, 보상협의 계획 등을 추가한 붙임의 ‘광역버스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벌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법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별표6] 제2호마목의2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교통사고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7-2. 교통사고 관련 자료

-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관련 자료는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51조(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55조·제64조 및 「보험업법」 제16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취득·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가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자)(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5호)

- 법 제51조제1항·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이라 한다)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다.

○ 별칙규정

구 분	내 용
처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법 제51조(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제2항 및 제3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 [별표9] 제2호자목 및 차목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만원■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만원

구 분	점 검 항 목	관 련 법	행정처분 내용
일반 현황	면허 또는 등록 차량의 타인 대여	여객법 제4조(면허 등)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4	행정처분 감차명령
	면허 및 등록 범위 위반 사업 시행 (업종 범위 벗어난 사업)	여객법 제4조(면허 등)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6의가 [별표5] 제1호의3의가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 과징금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이상) 540만원
	면허 및 등록 범위 위반 사업 시행 (운행계통 위반한 사업)	여객법 제4조(면허 등)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6의나 [별표5] 제1호의3의나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 과징금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이상) 540만원
	면허 및 등록 범위 위반 사업 시행 (차고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여객법 제4조(면허 등)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6의마 [별표5] 제1호의3의마	행정처분 (1차) 운행정지 3일, (2차) 운행정지 5일 과징금 (1차) 10만원(전세,특수여객20만원), (2차) 15만원 (전세,특수여객30만원)
	운수종사자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 미충족	여객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제1항2호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7의가 [별표5] 제1호의4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15일, (2차) 30일, (3차 이상) 45일 과징금 (1차) 90만원, (2차) 180만원, (3차) 270만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사업계획 위반-결행, 도중회차, 노선 단축 또는 연장 운행, 감회 또는 증회)	여객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12의가 [별표5] 제1호의7의가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50일 과징금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 상시주차)	여객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12의나 [별표5] 제1호의7의나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90일, (3차 이상) 감차명령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180만원, (3차 이상) 360만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주사무소, 영업소, 정류소 및 차고 신설·이전, 차량대수 임의 변경)	여객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12의다 [별표5] 제1호의7의다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50일 과징금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구 분	점 검 항 목	관 련 법	행정처분 내용
운전자 관리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자동차 미충당)	여객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12의라 [별표5] 제1호의7의라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감차명령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운행시간 미준수)	여객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12의마 [별표5] 제1호의7의마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과징금 (1차) 20만원, (2차) 40만원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기타)	여객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시행령 [별표5] 제1호의7의사	징금 (1차) 10만원, (2차) 15만원
	명의이용 금지 위반	여객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13	행정처분 사업면허취소 · 사업등록취소 · 사업허가취소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제1항 시행령 [별표9] 제2호카목	과태료 500만원
운전자 관리	자격 미달 운수종사자 운행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여객법 제24조(운전업무종사자격)제1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0 [별표5] 제1호의12 [별표6] 제2호거목	(운수회사) 행정처분 (1차) 감차명령, (2차) 노선폐지명령 과징금 시내 · 농어촌 · 마을 · 시외 · 전세버스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특수여객 · 수요응답형 · 플랫폼운송사업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운수종사자)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50만원
	운수종사자의 음주 미확인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전단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4 [별표5] 제1호의16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120일, (3차 이상) 180일 과징금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3차 이상) 1,080만원
	운행 전 운수종사자 미점검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허 [별표5] 제1호의18의터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 과징금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이상) 540만원
	운전자 입 · 퇴사 미보고 및 거짓 보고	여객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제1항 시행령 [별표6] 제2호파목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구 분	점 검 항 목	관 련 법	행정처분 내용
	종사원 건강진단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시행령 [별표35] 제4호녀목	과태료 (근로자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운 행 관 리	운행정보 미신고 및 운행기록증 자동차 미부착(전 세)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2, [별표5] 제1호의14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감차명령 과징금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이상) 720만원
	운전자 휴식시간 미준수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1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제7의3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3, [별표5] 제1호의15, [별표6] 제2호차목 및 러목	(운수회사)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과징금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운수종사자) 과태료 (1회) 10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10만원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미제출	여객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제1 항제3호 시행령 [별표6] 제2호하목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이상) 100만원
	음주 운수종사자 운행 허용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후단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5 [별표5] 제1호의17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180일, (3차 이상) 180일 과징금 (1차) 540만원, (2차) 1,080만원, (3차 이상) 1,620만원
	운행 전 차량 점검 미실시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더 [별표5] 제1호의18의너	행정처분 (1차) 운행정지 3일, (2차) 운행정지 5일 과징금 (1차) 10만원, (2차) 15만원
	차량 출발 전 여객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 미실시	여객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3항 시행령 [별표6] 제2호어목	과태료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
	운행기록자료의 보관 불량 및 미제출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 기록의 활용 등)제2항전단 시행령 [별표9] 제2호하목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구 분	점 검 항 목	관 련 법	행정처분 내용
	운행기록자료의 조작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제2항후단 시행령 [별표9] 제2호거목	과태료 100만원
교육 관리	운전자 승무 전 신규 또는 보수교육 등 미이수	여객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제1항, 제2항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의10)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8 [별표5] 제1호의20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자격정지 5일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과징금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90만원
	중대교통사고 발생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미이수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제1항 시행령 [별표9] 제2호러목	과태료 50만원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미실시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7항 시행령 [별표6] 제2호아목	과태료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미이수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제2항 시행령 [별표9] 제2호타목	과태료 50만원
교통 사고 관리	중대한 교통사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여객법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제2항 시행령 [별표6] 제2호마목의2	과태료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교통사고자료 보관 및 관리 불량	교통안전법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 · 관리)제2항 시행령 [별표9] 제2호자목	과태료 100만원
	교통사고관리 제출 요구 거부	교통안전법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 · 관리)제3항 시행령 [별표9] 제2호차목	과태료 100만원
자동차 관리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의 명칭) 미이행	여객법 제17조(자동차 표시)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17 [별표5] 제1호의10 [별표6] 제2호라목	행정처분 (1년 3회 이상 미표시) 운행정지 10일 과징금 (1년 3회 이상 미표시) 20만원 과태료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이상) 20만원

구 분	점 검 항 목	관 련 법	행정처분 내용
	좌석안전띠 상태 불량(광역급행형 버스, 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6항 시행령 [별표6] 제2호사목	과태료: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
	차내 표지판(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 미게시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라 [별표5] 제1호의18의라	행정처분 (1차) 운행정지 5일, (2차) 10일 과징금 (1차) 20만원, (2차) 40만원
	운행기록장치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자동차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사 [별표5] 제1호의18의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 시행령 [별표2] 제2호버목의1)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과징금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180만원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과태료 100만원
	속도제한장치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자동차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무단해체 및 조작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사 [별표5] 제1호의18의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해체·조작금지),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 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79조제5의2, 제80조제4호 시행령 [별표2] 제2호버목의1)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과징금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180만원 행정조치 자동차 임시검사 명령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과태료 100만원 (운수종사자) (무단해체, 조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해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미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여부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아 [별표5] 제1호의18의사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 과징금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3차) 1,080만원

구 분	점 검 항 목	관 련 법	행정처분 내용
	난방 및 냉방장치 미설치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자 [별표5] 제1호의18의아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과징금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180만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 작동 스위치 미설치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차 [별표5] 제1호의18의자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10일 과징금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안내방송 실시 상태 불량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카 [별표5] 제1호의18의차	행정처분 (1차) 운행정지3일, (2차) 5일 과징금 (1차) 10만원, (2차) 15만원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타 [별표5] 제1호의18의카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 과징금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3차) 1,080만원
	앞바퀴 튜브리스 미사용(시외, 전 세)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파 [별표5] 제1호의18의타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 과징금 (1차) 360만원, (2차) 720만원, (3차) 1,080만원
	운전자 보호 격벽시설 미설치(시내 일반버스)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거 [별표5] 제1호의18의하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 과징금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이상) 540만원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여객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여객법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게시 등)제1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서 [별표5] 제1호의18의버 [별표6] 제2호너목	행정처분 (1차) 운행정지 5일 과징금 10만원 과태료 (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이상) 20만원
	영상기록장치의 미설치(시내, 농어 촌, 마을, 시외, 전세)	여객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제1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9 [별표5] 제1호의21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20일, (3차 이상) 30일 과징금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이상) 180만원

구 분	점 검 항 목	관 련 법	행정처분 내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	여객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42, [별표5] 제1호의32	행정처분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과징금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 기록의 활용 등)제1항 시행령 [별표9] 제2호파목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시행령 [별표9] 제2호너목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등록번호판 부적정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시행령 [별표2] 제2호라목 ~ 사목	과태료 (미부착, 미봉인) 50만원, (부착 및 봉인 미재신청) 10만원, (미부착 · 미봉인 차량 운행 및 인식곤란 · 인식곤란차량 운행)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
	자동차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전 기 · 전자장치, 광각실외후사경, 후방영 상장치및후진경고음발생장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1항 시행령 [별표2] 제2호벼목의2)	과태료 30만원
	자동차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 (창유리, 소화기및방화장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1항 시행령 [별표2] 제2호벼목의3)	과태료 5만원
	자동차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 (접지부분및접지압력, 주행 · 조종 · 제동 · 등화장치, 경음기및경보장치, 방향지시등기타지시장치, 후사경 · 창닦이기기타시야확보장치, 속도계 및기타계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1항 시행령 [별표2] 제2호벼목의4)	과태료 3만원
	정비 작업범위 초과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정비) 법 제81조(벌칙)제21호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 분	점 검 항 목	관 련 법	행정처분 내용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시행령 [별표2] 제2호보록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증액, (115일 이상) 60만원
	차량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법 제81조제19호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내 가요반주기 설치 · 이용 및 좌석안전띠 착용 미지도(전세)	여객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처 및 커 [별표5] 제1호의18의저 및 처	행정처분 과징금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이상) 90일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이상)540만원
	사고 시 대처요령 및 안전관련 안내 방송 미실시(시외, 전세)	여객법 제21조(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제13항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6의어 [별표5] 제1호의18의서	행정처분 과징금	(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사업일부정지 60일,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 90일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이상)540만원
기타	관할관청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	여객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27 [별표5] 제1호의19	행정처분 과징금	(1차) 사업일부정지 20일, (2차) 40일, (3차 이상) 60일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이상) 360만원
	교통안전관리규정 미작성 및 미준수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 · 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별표9] 제2호가목	과태료	200만원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제1항 및 제6항 시행령 [별표9] 제2호나목	과태료	300만원

9-1.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 사이트 주소: <https://drv.kotsa.or.kr>

○ 메인화면

처리할 업무 * 2023.11.03 10:49 기준 처리할 업무 현황입니다.

월마감 처리 작성 (2023년 10월) 2023-10-20 20:20	전산자료 수정 요청현황 승인 0건 대기 2건 반려 0건 수정요청 바로가기 >	개인정보 제공 요청현황 승인 0건 대기 1건 반려 0건 수정요청 바로가기 >	휴식시간 등록 미제출 (2022년 08월)
---	---	---	-------------------------------

증거찾는 메뉴 * 메뉴 클릭 시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② 운수종사자 정보조회	입퇴사 등록관리	취업 운수종사자 명단	운수회사 정보 관리	전산자료 요청
+ 등록된 메뉴가 없습니다.	+ 등록된 메뉴가 없습니다.	+ 등록된 메뉴가 없습니다.	+ 등록된 메뉴가 없습니다.	+ 등록된 메뉴가 없습니다.

운수회사/운전자 현황 (출마감기준 : 2022년 08월) # 전체 # 버스 # 특수여객 # 택시 # 화물 2022년 08월 ▾ 데이터 ③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출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운수회사 ■ 운전자

알림 ① 11월 02일 알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11월 01일 알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10월 31일 알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④ 10월 30일

- ① 처리할 업무: 시스템 로그인 시 처리가 필요한 업무 현황 알림
- ② 즐겨찾는 메뉴: 개인별로 자주 쓰는 메뉴를 등록하여 바로가기 버튼 설정
- ③ 알림(서비스신청): 맞춤형 알림서비스 알림 현황

운수회사 정보변경
알림서비스
- 알림서비스 이력
- 알림서비스 신청

알림서비스 신청 화면은 번호

최대 3개 휴대폰 번호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된 휴대폰 번호는 주당 1회 이상 기여로 차세대 운송에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 등록 후 번호를 클릭하여 아래 링크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번호로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

No. 알립서비스 구분 신청등록

신청인 성명 * 휴대폰 번호 * 인증번호 *

카카오통·알림서비스 등록
번호 등록 후에는 알립서비스 받을 대상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합니다.

- ④ 사이트맵: 사이트를 구성하는 페이지 목록

○ 주요 기능

① 운수회사 관리

- 휴식시간 보장내역 관리: 휴식시간 보장내역 등록 및 휴식시간 미준수자 명단

② 운수종사자 정보관리

- 입퇴사 관리: 입퇴사 등록 및 입퇴사자 명단
- 교육정보 관리: 체험교육 대상 및 이수자 명단
- 운전자격증명 발급관리: 자격증명 발급 및 관리

③ 운수종사자 정보조회

- 채용예정 자격 조회: 채용예정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아 자격요건을 조회
(정밀검사 미수검 사항, 체험교육 대상자,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정보, 교육 이력)

④ 운수회사 정보 조회

- 운수종사자 명단: 취업·입퇴사·퇴직미처리자(이중취업자) 명단
- 운전면허 부적합 명단: 운전면허 취소 정지자, 음주운전 취소/위반 명단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교통사고 및 위반 발생자 명단
- 운전정밀검사: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및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명단
- 운전자격증: 자격증 (미)취득자 명단

⑤ 마감자료 관리

- 주·월마감 자료 조회

⑥ 지원서비스

- 전산자료 요청: 운수회사, 운수종사자 정보 수정 요청 등

9-2. 운수안전컨설팅 시스템

※ 사이트 주소: <https://kotsa.or.kr/cosas>

○ 메인화면



① DTG 제출 현황: DTG제출대수 및 제출기간

② 안전정보: 사고지수 및 안전도 평가지수

③ 기타 주요기능

- 사고현황: 조회기간내 사고발생 현황
- 자동차 안전정보: 면허대수, 등록대수, 차량정보(검사관련) 등
- 운수종사자 안전정보: 정밀검사 미수검자, 교육대상자, 교통사고 발생자, 자격증 미취득자 등

○ 주요 기능

1 우리회사 정보	2 교통안전관리규정	3 교통수단안전점검	4 도로안전정보	5 정보마당	6 사용자정보 관리
총합안전정보 우리회사 상세정보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일반현황 등록 규정서식 자료실	교통수단안전점검(운수회사)	도로안전정보 조회	소통마당 FAQ	사용자정보 변경 교통안전담당자등록

① 우리회사 정보

- 회사정보 및 운수종사자의 상세 정보를 조회

(위험운전행동 의심차량, 휴게시간 의심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의심차량 등)



② 교통안전관리규정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일정 등을 조회

③ 교통수단안전점검

- 교통수단안전점검 이력 확인 및 조회

④ 도로안전정보

- 위험지점 정보 및 사고 현황, 과속 및 속도제한 장치 해제 차량 확인 등

⑤ 정보마당: 소통마당 및 FAQ

⑥ 사용자정보 관리: 교통안전담당자 등록 등